

○ ○ 당

문서번호

시행일자

수 신 ○○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

제 목 후보자로 선출된 자의 자격상실 통보

년 월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에 있어서 「공직선거법」 제57조의2(당내경선의 실시)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○○당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자격을 상실하였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선거구명	후보자로 선출된 자				자 격 상 실		비 고
	성 명	주민등록 번호	주 소	전화번호	일 시	사 유	

붙임 : 자격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부. 끝.

○ ○ 당 인
대 표 자 ○ ○ ○ 인

- 주 : 1.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"선거구명"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2. "자격상실 사유"란에는 사퇴, 사망, 피선거권 상실, 당적의 이탈·변경 등의 사유를 기재합니다.
3. 자격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사퇴서 사본, 탈당원서 사본 등 자격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.